미제의 침략적인 전쟁연습과 유엔에서의 대조선《제재》책동은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위반한 범죄행위

한 영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특히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폭풍쳐 달려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침략적인 군사연습과 대조선《제재》책동에 끈질기게 매여달리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끊임없는 전쟁연습소동과 끈질긴《제재》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항시적으로 핵전쟁위험이 떠도는 최대열점지역으로 되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제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서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

조선반도에서의 새 전쟁도발과 대조선《제재》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유엔헌장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다.

미제의 침략적인 전쟁연습과 유엔에서의 대조선《제재》책동이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위반한 범죄행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매개 나라들의 자주권을 존중할데 대하여 규정한 국제법규범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범죄행위이기때문이다.

자주권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모든 나라들은 국제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다같은 자주권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는 자주권에 기초한 완전한 평등이 보장되여야 한다. 이것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헌장 제1조 2항에서는 유엔성원국들은 《인민의 평등권 및 자결권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들사이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제2조 1항에서는 《모든 성원 국들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활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유엔헌장의 요구에 맞게 매개 나라들은 외부세력의 침해로부터 자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헌장은 안중에도 없이 침략적인 군사연습과 대조선《제 재》를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압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 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최근 우리 공화국이 핵을 개발하고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기때문에 제재와 군사적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유엔헌장이나 기존의 유엔총회결의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 등 여러 국제법전 그 어디에도 핵시험이나 탄도로케트발사, 인공지구위성발사가 국 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하나도 없다.

우리 공화국의 핵개발과 위성발사는 철저히 미제의 핵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자주적권리이다.

지난 시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핵무기를 끌어다놓고 핵전쟁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려놓았으며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미쳐날뛰였다.

우리의 핵개발은 미제의 핵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사회주의제도 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법상 공인된 자위적조치이다.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제12조에는 《매개 국가들은 무장침공을 반대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자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여있다.

이 조항을 풀이하면 국제관계에서 매 국가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단독 혹은 여러 나라들과 함께 자위권을 가지게 되며 이 자위권은 매개 나라들이 생존을 위하여 반 드시 가지게 되는 권리이라는것이다.

자기를 방위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자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수 없으며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법률상지위를 가지고 국가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따라서 매개 독립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의 침략에 대처하여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을 가지게 된다.

우리 공화국이 핵억제력을 가지는것은 미제가 남조선을 핵무기고로 전변시키고 북침 핵전쟁계획을 작성, 완성하였으며 로골적으로 우리에게 핵공격위협을 가하고있는 조건에서 응당하게 가지는 권리이다.

우리 공화국의 핵개발과 위성발사를 《제재》의 리유로 내돌리고있는 그자체가 극악한 자주권유린행위이다.

미제가 벌리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살책동과《제재》는 우리의 위성발사나 핵개발때문인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보루로서 자본주의멸망, 미제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인류에게 현실로 깨우쳐주고있으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세운 낡은 국제질서와 딸라의 지배에 얽매이지 않고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은 이러저러한 구실아닌 《구실》을 날조하여 우리 공화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고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이며 행복의 요람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허물려는 자주권유린행위이다.

미제의 침략적인 전쟁연습과 유엔에서의 대조선《제재》책동이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위반한 범죄행위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행사하지 말데 대하여 규정한 국제법규범들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기때문이다.

원래 유엔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목적밑에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따라서 유엔성 원국들은 다른 나라의 령토완정과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위협과 무력행사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에서는 유엔의 모든 성원국들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다른 나라들을 《힘으로 위협하거나 또는 힘을 행사》하는것을 삼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모든 유엔성원국들은 유엔헌장을 승인하고 그 성원국으로 된것만큼 이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면서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위협하여왔으며 그 도수를 끊임없이 높이면서 조선반도 전체를 타고앉으려고 미쳐날뛰였다.

미제는 1950년대에 우리 공화국을 타고앉으려고 전대미문의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그후 오늘까지 수십년동안 각종 명목의 침략전쟁연습을 확대강화하여왔다.

지금까지 미국은 조선전쟁계획들을 류형별로 짜놓고 그에 따라 수십년동안 해마다《팀스피리트》,《련합전시증원연습》,《키 리졸브》,《독수리》,《을지 프리덤 가디언》등 각종 전쟁연습을 이름을 바꾸어가며 감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위협하였다.

특히 2016년 3월부터 4월말까지 벌려온 사상최대규모의 《키 리졸브》,《독수리16》합동 군사연습에는 미제침략군 2만 7 000여명, 남조선괴뢰군 30만여명, 추종국가군대들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과 《스테니스》호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수많은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였으며 주권국가의 수뇌부를 특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고 세상에 뻐젓이 내놓고 떠벌이였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과 남조선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핵 전쟁연습을 쉴새없이 벌려놓고있는것은 유엔성원국인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고 없애버리려 는 군사적위협으로서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다.

미제의 침략적인 전쟁연습과 유엔에서의 대조선《제재》책동이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위반한 범죄행위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모든 유엔성원국들의 경제발전과 사회적진보를 도모할데 대한 국제법규범들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기때문이다.

원래 유엔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뿐아니라 성원국들호상간의 경제문화교류를 도 모할것을 목적으로 하여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유엔헌장 서문에는 모든 유엔성원국들은 《경제적 및 사회적진보의 촉진을 위하여》유 엔을 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여있으며 헌장 제9장 55조 및 56조에는 인민들의 생활수 준의 향상, 경제적, 사회적진보와 발전, 경제, 사회, 보건, 문화,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 에서의 국제적협조 등의 목적을 위하여 유엔과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존엄높은 유엔성원국인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미국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리사회에서 결의아닌 《결의》를 조작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랄하고 비렬한 《제재》를 항시적으로 가 하는데 유엔을 도용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제재의 목적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질 식시켜 나중에는 우리 공화국을 허물어버리려는데 있다.

미국은 력사적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책동에 매달려왔다.

미국은 1950년 6월 28일에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금지조치를 취할데 대한 결의를, 1950년 12월 17일에는 우리 공화국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으로 선포하고 모든 경제관계를 단절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1951년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공화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나라에 대하여서는 무려 10배의 고률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무역협정연장법》이라는것을 들고나왔으며 그후 별의별 악법들을 휘둘러 경

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였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유엔을 리용하여 수많은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들을 채택하였다. 특히 미국의 추동밑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2006년 우리 나라에서의 제1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1718호》(S/RES/1718)를, 2009년에는 제2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1874호》(S/RES/1874)를, 2013년에는 제3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2094호》 (S/RES/2094)를, 2016년에는 수소탄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2270호》(S/RES/2270)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력사적으로 미국은 단독으로 혹은 추종국가들과 공동으로 그리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책동을 감행하였다.

미국이 유엔을 도용하여 채택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결의는 그 악랄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미국은 추종국가들과 어중이뗘중이들, 국제기구까지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의 목을 조 인다고 하면서 서방나라들은 물론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있던 나라들에도 압력 을 가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것을 강요하여왔다.

미국은 별의별 악법들을 휘둘러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여왔다. 현재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적용하고있는 각종 제재관련법과 조치들은 무려 수백가지에 달한다. 이러한 법들은 그 내용이 서로 겹치면서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설사 그 어느 하나를 해제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무의미한것으로 되고있다.

실례로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수출관련법》의 적용을 철회한다면 그것을 《수출입은행법》으로 대신할수 있게 되여있다. 2008년에 우리 공화국에 억지로 씌웠던 《테로지원국》의 감투를 벗긴다고 하였지만 《수출입은행법》, 《무기수출통제법》 등은 사회주의국가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이라는 구실밑에 가하고있는 제재에 다 포함되는것이므로 그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책동은 관세정책과 금융부문에서 더욱 포악하게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적국관세지역명단에 올려놓고 차별적인 관세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외국에 있는 우리 나라의 자금을 동결시키는가 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 무역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군사분야는 더 말할것도 없고 우리 공화국의 전략물자수입에 제동을 거는것은 물론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로부터 주요공장설비,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거래를 금지시키면서 화학공업에 필요한 설비들은 2중용도로 리용될수 있다느니, 쌀은 군량미로 전용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각방으로 그 수입을 막아나서고있다. 지어 화장품과 귀중품, 기초품, 어린이장난감 같은것도 제재항목에 넣고 그것이 단 한점이라도 새여들어가지 못하게 책동하고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제재의 근본목적은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종국적으로 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려는데 있다.

미국은 가장 강도높은 결의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 2270호》의 《제재결의》에 의하여 늦어서 6개월, 빠르면 2~3개월후이면 그 효과가 나타나 우리 공화국을 굴복시킬수 있게 될것이라고 떠벌였다.

실로 미국의 대조선경제제재책동은 끈질기고 전면적인것으로서 그 가혹성과 악랄성. 저

렬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것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제재대상들과 상업 및 금융거래를 하지 말데 대하여 렬거하여 유 엔성원국들에 내려먹인 《지침》만 해도 무려 32건이나 되지만 유엔성원국들중 81.1%에 달 하는 나라들이 그와 관련한 보고서를 지금까지 유엔에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연습과 유엔에서의 대조선《제재》책동은 유엔헌장의 여러 조문들에 규제된 내용을 란폭하게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미국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대조선경제제재로 하여 우리 인민에게 막대한 해독을 끼친데 대하여 사죄하여야 한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세계평화와 안전의 교란자, 파괴자이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심판받아야 할 범죄자이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의 주라격대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위반한 미제의 침략적인 전쟁연습과 유엔에서의 대조선《제재》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림으로써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